

수원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나12688(본소), 2024나12695(반소) 판결
[청구이의 · 공사대금]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나12688(본소), 2024나12695(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11 선고 2020가합103271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력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윤도근, 강민정

변론 종결 2024. 9. 13.

판결 선고 2024. 10. 25.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11. 선고 2020가합103271(본소),
2021가합104738(반소)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950,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2024. 10. 25.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20. 1. 3. 작성 증서 2020년 제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218,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7.부터 2023. 10.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1)).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20. 1. 3.

작성 증서 2020년 제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2,387,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2023. 10.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44,35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2024. 1. 1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6.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쪽 5행의 "2019. 12. 30."을 "2020. 1. 2.(정산합의서에는 작성일자가 2019. 12. 30.로 기재되어 있음)"로 고친다.
- 6쪽 아래에서 8행의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고친다.
- 6쪽 아래에서 6행의 "765,500,000원"을 "756,500,000원"으로 고친다.
- 7쪽 3행의 "기재"를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친다.
- 7쪽 3행의 "감정인 G"을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이하 '감정인 G'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7쪽 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으로 고친다.
- 7쪽 5행의 "감정인 H"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이하 '감정인 H'라 한다)"로 고친다.

- 7쪽 마지막 행의 "2022. 6. 26.까지의"부터 8쪽 1행의 "지체일수 938일)"까지를 "2020. 4. 24.까지의 지체상금 364,870,000원(= 약정 공사대금 2,354,000,000원 × 지체상금률 0.1% × 지체일수 155일)"로 고친다.
- 8쪽 4행의 "2,112,174,761원"을 "341,218,761원"으로 고친다.
- 8쪽 6행의 "2,135,826,000원"을 "364,870,000원"으로 고친다.
- 9쪽 아래에서 7행의 "132,649,713원"을 "129,087,480원"으로 고친다.
- 10쪽 2행의 "이 법원"을 비롯하여 제1심 판결문 중 그 이하에 기재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일괄하여 고친다.
- 10쪽 2행의 "피고 측"을 "원고 측"으로 고친다.
- 12쪽 표의 [건축-11] 항목에 관한 판단 부분 10행의 "이유 있다."를 "이유 없다."로 고친다.
- 12쪽 표의 [건축-14] 및 [건축-90] 항목 부분 중 "[건축-90] 1호 배란다 세대 칸막이"를 "[건축-90] 1호 배란다 세대 칸막이"로 고친다.
- 13쪽 표 중 [설비-13, 16, 18, 20, 22] 항목에 관한 판단 부분 5행의 "포함"을 "포함"으로 고친다.
- 14쪽 표 마지막 부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건축-18] 옥외 3층 발코니 후면부 무근콘크리트 타설 후 방수 및 [건축-27] 3층 옥외 북측 싱글지붕(철거 및 폐기물처리)	이 부분 항목들은 위 3층 후면 경사지붕 재시공 항목과 중복되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주장 인용, 하자 제외]앞서 든 증거들과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3층 후면 경사지붕 재시공 하자는 이 사건 2차 감정결과에서 추가된 항목이고, 이 부분 하자들은 이 사건 1차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인 점, ② 감정인 H는 3층 후면 경사지붕 재시공 하자에 대하여 '샌드위치 판넬 경사지붕을 철거하고 방수공사를 재시공하는 공사비를 산정하였다'는 의견을 밝혔고(이 사건 2차 감정서 17쪽), 감정인 G은 이 부분 하자들에 대하여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피고가 미시공한(우레탄 방수 + 무근콘크리트 + 우레탄 마감) 부분에 대하여 이를 시공하는 비용을 산정하였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을 비용으로 산정하였다'는 의견을 밝힌 점(이 사건 1차 감정서 92쪽, 109쪽), ③ 감정인 H가 산정한 3층 후면 경사지붕 재시공 부분의 하자보수비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도장공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 사건 2차 감정서 2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항목들은 위 3층 후면 경사지붕 재시공 항목과 중복되므로 하자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14쪽 2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의 설계도면(갑 제23호증, 이하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감정하여야 하는데도 감정인 G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감정하지 않았으므로 그와 같은 감정결과와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원칙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하자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경시공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현장 실시공 현황에 계약내역서, 설계도면, 준공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된 부분이 존재하여 감정인 G은 제1심 법원의 명에 따라 계약내역서(갑 제24호증)와 설계도면(갑 제23호증)을 기준으로 감정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정인 G의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제1심 법원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취지의 이의에 따라 감정인 H에 의하여 재감정이 실시되었는바, 제1심 법원은 감정인 G의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감정인 H의 감정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였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건물에 별지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 외에도 서·북쪽 옹벽 및 후면부 방수공사 부분, 계단실 재시공 공사 부분에 관한 하자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 261,492,000원 상당의 손해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 15쪽 1행의 "132,649,713원"을 "129,087,480원4) "으로 고친다.
- 17쪽 아래에서 7행의 "이 사건 도급계약 이 사건 도급"을 "이 사건 도급"으로 고친다.
- 18쪽 1행과 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및 정산합의서(갑 제7호증)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지체상금의 종기를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일로 정하였고 원고가 준공에 필요한 공사를 마무리한 뒤 2020. 4. 24.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지체상금의 종기가 2020. 4. 24.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지체상금의 종기를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2019. 12. 11.경 대부분의 주요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공사는 완성된 것이고 일부 보수를 요하는 하자가 있었던 것이므로 지체상금의 종기는 2019. 12. 11.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2019. 12. 11. 이후인 2019. 12. 30.자 정산합의서에 따르면, 당시에 미시공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2020. 1. 초경 이루어진 현장조사에서 특별검사원은 이 사건 건물이 미완공 상태로 공사완료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완지시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9. 12. 11.경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8쪽 3행의 "103,576,000원(= 약정 공사대금 2,354,000,000원"을 "100,188,000원(= 약정 공사대금 2,277,000,000원5))"으로 고친다.

○ 18쪽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설계변경, 착공계 승인 지연, 원고 측의 현장소장 폭행 등 피고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공사지연 일수는 지체상금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측의 변경시공 및 추가시공 요구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 건축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제3항),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26, 6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착공신고와 관련하여, 최초작성일이 2019. 2. 26., 접수일이 2019. 3. 4., 처리예정일이 2019. 3. 5., 착공 승인일이 2019. 3. 5.이었는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면 위 건축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착공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과천시에서의 착공 승인이 지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갑 제36호증, 을 제21, 6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약 20일 가량 공사가 중단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공사가 중단된 사유가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8쪽 6, 7행의 "236,225,713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132,649,713원 + 지체상금 103,576,000원)"을 "229,275,480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129,087,480원 + 지체상금 100,188,000원)"으로 고친다.
- 18쪽 아래에서 4행의 "피고가 원고에게"를 "원고가 피고에게"로 고친다.
- 19쪽 3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이 법원 변론종결일"로 고친다.
- 19쪽 5행의 "236,225,713원"을 "229,275,480원"으로 고친다.
- 19쪽 6, 7행의 "411,274,287원(= 647,500,000원 - 236,225,713원)"을 "418,224,520원(= 647,500,000원 ~ 229,275,480원)"으로 고친다.
- 22쪽 9, 10행의 "236,219,414원"을 "229,275,480원"으로 고친다.
- 22쪽 16, 17행의 "236,225,713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93,774,287원(= 330,000,000원 - 236,225,713원)이 남게 되고,"를 "229,275,48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100,724,520원(= 330,000,000원 ~ 229,275,480원)이 남게 되고,"로 고친다.
- 22쪽 아래에서 4행부터 23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418,224,520원(= 2차 잔금 잔액 317,500,000원 + 3차 잔금 잔액 100,724,520원) 및 △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미지급 공사대금 411,274,287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4. 2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6,950,233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4. 2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4쪽 [별지] 하자보수비 집계표 건축-18 항목 인정금액란의 "2,032,451"과 건축-27항목

인정금액란의 "1,529,782"를 각 "0"으로 고친다.

○ 27쪽 [별지] 하자보수비 집계표 [합계]란의 "94,753,963"을 "91,191,730"으로 고친다.

○ 30쪽 [별지] 하자보수비 집계표 [총합계]란의 "132,649,713"을 "129,087,480"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이 법원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승철

판사박해빈

판사강은주

별지

1) 원고의 2024. 3. 14.자 준비서면 14쪽 참조

2) 원고의 본소 부분에 관한 항소취지와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 기재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는바, 원고 항소장 기재대로 원고의 항소취지를 기재한다.

3) 특히 서·북쪽 옹벽 및 후면부 방수공사 부분에 대하여 △ 감정인 G은 지하 2층 서·북쪽 옹벽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지하 2층 평면도상 별도의 옹벽 표기가 없어 공사비 산정에서 제외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이 사건 1차 감정서 503, 505쪽 참조), △ 감정인 H는 지하 2층 서·북쪽 옹벽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설계도면(갑 제23호증)에서도 옹벽을 시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구조 평면도(옹벽 위치), 옹벽철근배근도, 구조계산서 등이 누락되어 실질적인 시공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옹벽을 시공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가능한데, 서측과 북측의 부지에 공간이 없어서 시공이 어려울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 사건 2차 감정서 82쪽 참조).

4) = 제1심에서 인정된 하자보수비 132,649,713원 - ([건축-18] 항목 하자보수비 2,032,451원 + [건축-27] 항목 하자보수비 1,529,782원)

5) △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0조 제1항은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정산합의서(갑 제7호증)에는 달리 지체상금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 이 사건 정산합의는 당초 약정에 따른 완공예정일인 2019. 11. 30.의 다음 날로서 이 사건 지체상금의 발생일인 2019. 12. 1.로부터 약 1달이 지난 2020. 1. 2.에서야 체결된 점, △ 이 사건 정산합의를 통해 증액된 공사대금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으로 보이는데,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은 원칙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총공사대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공사가 진행되어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는 지체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공사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점, △ 원고 또한 당초 2,277,000,000원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주장한 점(원고의 2023. 10.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6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지체상금의 기준금액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최초 계약금액인 2,277,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